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3.(목)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18호
- 발 의 일: 2025년 10월 10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2. 제안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금융회사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안 제3조~제5조)
- 피해 예방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4.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전입니다.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과거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문자메세지), 파밍(PC감염), 큐싱(QR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기로 발전하였으며, 장례식 사칭, 결혼식 사칭, 택배 사칭 등 특정 상황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2011. 9. 30.)하여 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사기수법이 고도화, 기능화, 국제분업화 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단속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교육 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를 따름으로써 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신사기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통신사기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부 및 유관단체 간 협력,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 단체장과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 제6조는 통신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근거와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 사업이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통신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의 중앙행정 기관과 금융기관, 유관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통신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 전국 발생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전년대비 증감(률)
기관사칭형_발생건수	8,930	11,314	9,519	(△15.8)
기관사칭형_피해액 (억 원)	2,077	2,364	5,349	(126.2)
대출사기형_발생건수	12,902	7,588	11,320	(49.1)
대출사기형_피해액 (억 원)	3,361	2,108	3,196	(51.6)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 대구광역시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2년	'23년	'24년	전년대비 증감(률)
대구광역시	593	465	704	(51.3)
서울	6,245	5,865	5,215	(△11)

<대구경찰청>

☞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액은 2023년 100억 원에서 2024년 290억 원으로 **190%증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19호
- 발 의 일: 2025년 10월 10일
-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2. 제안사유

○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문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업무의 대행 및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4.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19년부터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 발생으로 생존권 위협과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위생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가방역이 어려운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응함으로써 각종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우선 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단체 사무 중 감염병 예방과 방역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써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 제5조에서는 방문방역 기동반 편성에 대한 규정을 두어 방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단체 사무 중 바목의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감염병 예방 의무에 따라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방역취약계층 현황
(안 제2조제2호 관련)

2025. 10. 1. 기준

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39,369명	15,647명	5,907명	4,860명	12,955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20호
- 발 의 일: 2025년 10월 10일
-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2. 제안사유

-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이며(2003년 이후 줄곧 1위), 이는 OECD 평균 10.7명과 비교 할 때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약 3배나 증가하였고, 10대·20대 자살률의 악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증가 등 앞으로도 심각한 자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살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10대·20대 10년 간 자살률 추이

구 분	2014년	2023년	비고
10대	4.5명	7.9명	(75.6% 증가)
20대	17.8명	22.2명	(24.7% 증가)

<2025년 자살예방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자료 발췌>

달성군 자살자 통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살자 수	69명	48명	52명	48명	62명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27.3명	18.7명	20.0명	18.3명	23.6명

<통계청 자료 발췌>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자살위험군의 조기대응에 협력하도록 하고 군수는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를 보면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를 조례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조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6조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과 지역사회 보건복지안전망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상위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각 조문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법함 없이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 안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단순한 기념식 행사개최를 지양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 예방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 562억 원 보다 146억 원(26%) 증액된 708억 원 편성했으며,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성군 자살예방사업 예산

(단위: 원)

구분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00%)	(00%)	(00%)	(00%)	(00%)
지자체 직접사업비(A)		-	-	-	-	-
센터예산 (B)	운영비	2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
	인건비	143,603,240	71,801,620	35,900,810	35,900,810	-
	사업비	67,444,760	33,722,380	16,861,190	16,861,190	-
	기타	-	-	-	-	-
	소계	231,048,000	115,524,000	57,762,000	57,762,000	-
총계(A+B)		231,048,000	115,524,000	57,762,000	57,762,000	-
비고		-				

<2025년 달성군 자살예방시행계획 발췌>

<참고> 해외 주요국 자살률 개선 사례

국가명	주요 제도	자살률 추이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국가 자살예방 프로젝트” 실시 · '86~'92년동안 조사 인력 5만명을 투입해 자살 사망자 전수(1,337명) 대상 심리부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통해 우울-자살 간 높은 관련성 도출 ⇨ 우울증 조기 식별,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실시 · '86년 “10년 내 자살률 20% 감소” 목표로 총기 허가 연령 상향(18→20세) 등 추진 	'90. 30.3명 ↓ '10. 17.6명 ↓ '21. 13.2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직속으로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 '07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07·'12·'17·'22)에 걸쳐 종합대책 수립·추진 ·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역 자살 대책 긴급강화 기금” 조성 · 아동·청소년·근로자 등 대상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99. 25.5명 ↓ '10. 21.7명 ↓ '21. 15.6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국가 자살예방전략” 수립 · '18년 고독부 장관 및 자살예방 차관 신설 · '19년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모임, 미술치료, 자원봉사 등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 참여를 연결하는 제도 - 이용자 80%가 행복감 증진, 70%가 고립 감소 	'81. 9.6명 ↓ '10. 6.7명 ↓ '21. 8.8명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연합 네트워크(GAAD)”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뉘른베르크에서 시작 → 82개 지역으로 확대 - 지역 내 게이트 키퍼 육성, 대국민 홍보캠페인, 1차 진료의사의 우울증 인지 역량 강화 등 - 자살시도율 24% 감소 등 효과 · '02년 ‘Youth-Life-Line“ 설립 → 청소년 대상 익명 이메일 상담 서비스 및 학교 예방 교육 등 실시 	'90. 17.7명 ↓ '10. 11.2명 ↓ '20. 9.7명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발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21호
- 발 의 일: 2025년 10월 10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2. 제안사유

- 공중화장실로 한정된 기존 조례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
-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안 제1조~제12조)

4.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된 내용인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으며, 최근 불법촬영 피해가 공중화장실이라는 특정 공간보다 버스·지하철,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 예방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넓혀 군민의 사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개정 연혁

<p>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p>
<p>[법률 제7129호, 2004.1.29., 제정] [시행 2004.7.30.]</p>	<p>[법률 제18302호, 2021.7.2./0., 일부개정] [시행 2023.7.21.]</p>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공중화장실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촬영이라는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적용범위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넓어짐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의 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더불어 긴급 신고 체계 강화,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불법촬영 탐지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의 모색 등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